

자부심이 올랐다, 우미린이 웃었다!

울산 다운2지구 우미 Lynn **더시그니처**

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참고자료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을 통해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**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**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,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)

구분	내 용
대상자	<p>[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20.)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에 거주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(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) ③ 혼인기간 7년 이내 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)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충족) ⑤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우선공급(50%) :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 이하인 자 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% 이하) ② 일반공급(20%) :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 이하인 자 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 ※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추첨제(30%) :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40% 초과하나 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) 부동산 가액 기준 3.31억원 이하 충족하는 자 ※ 우선공급,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
경쟁이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제1순위 :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민법」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(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)를 포함 -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: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→ 무자녀 또는 2018.12.11.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•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(울산광역시)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수가 많은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·입양한 미성년자녀(전혼자녀)를 포함하되,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. -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•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(울산광역시)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• 소형·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 •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,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 •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합니다. •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• 만60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

※ 본 내용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및 편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